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 번호 1569

제출연월일: 2021. 3.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가족 돌봄지원을 위하여 재계약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1) 대상시설: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권 숙)

시설명	위 치	규모 직원	(명,m²) 연면적	계약 만료일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118, 1122호	4	70.07 m²	'21.6.30

- 2) 수 탁 체: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대표 김종옥)
- 2) 위탁기간: 계약만료 익일부터 3년
- 3) 위탁운영체 선정: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 ※ 2021. 3. 30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계약 심사

나. 주요 위탁내용

- 1)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사례지원활동
- 2) 장애인가족의 위기문제에 대한 긴급지원

- 3) 장애인가족 상담지원
- 4)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1)「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가족 지원)
-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1) 성동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전문 인력 확보 및 전문 프로그램 개발·도입 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 2) 장애인가족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 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 3)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 나. 위탁운영비(2021년 예산): 308,082천원 (시비 112,916 구비 195,166)

[참고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 가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 시설관리 사무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동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